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724 |
|----------|------|

발의연월일 : 2020. 7. 9.

발의자 : 박정·정성호·유동수

권칠승·김승원·맹성규

김회재·이해식·위성곤

홍성국·송옥주·황운하

박영순·박성준·송갑석

김수홍·김경만·야진[비]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비기간제한시적,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안정적 고용상태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고용되었더라도 고용된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통상적 조건으로 취업이 극히 곤란하므로 국가가 이들의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법 제6조, 제11조, 제13조의2, 제26조, 제28조 등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제7조에서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고용 불안정과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 평등을 강조하여 보다 강한 추진 동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제5호 신설 및 제6조제1항제11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배려하고 근로자의 취업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수립 · 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안정적인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수립 · 시행할 것

제6조제1항제11호 중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 <p>제3조(기본원칙) -----</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배려하고 근로자의 취업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수립·시행할 것</p> |
| <p><u>4. (생 략)</u></p> <p><u>5. (생 략)</u></p> <p><u>6. (생 략)</u></p> | <p>5. 고용정책은 안정적인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수립·시행할 것</p> <p>6. (현행 제4호와 같음)</p> <p>8.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
| <p>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10. (생 략)</p> <p>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u>건전성</u>을 높이는 데 필요</p> | <p>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p> <p>-----</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p> <p>----<u>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u></p> |

| | |
|-------------|----------------------|
| 한 사항 | <u>안정</u> ----- |
| ② ~ ④ (생 략) | -- ② ~ ④ (현행과 같음) |